

문화체육관광부령 제 호

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기 관 명 (부 서 명)	문화체육관광부 (체육정책과)
연 월 일	2022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개정이유

「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」 제13조에 근거하여 수여하는 대한민국체육상의 장애인체육 부문인 극복상, 특수체육상의 명칭을 개선하는 내용으로 과거 신체적·정신적 장애를 극복하고 그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던 장애인체육이 체육 참여를 통한 체력증진과 장애인의 삶의 질 개선, 사회적 효능감 제고 등으로 확대됨에 따라 ‘장애’를 극복의 대상으로 한정하는 ‘극복상’이라는 부정적인 명칭을 ‘장애인경기상’으로 명칭을 변경하고, ‘특수체육’은 장애인체육교육에서 주로 사용하는 용어로 체육교육뿐만 아니라 생활체육, 전문체육 등 장애인체육 전반에 대한 기여를 포괄할 수 있도록 ‘특수체육상’을 ‘장애인체육상’으로 변경하며, 대한민국체육상의 성격이 시상에서 포상으로 변경됨에 따라 심사위원회 구성 등을 「상훈법 시행령」에 부합하도록 정비하려는 것임

2. 주요내용

- 가. 대한민국체육상의 종류 중 극복상, 특수체육상을 ‘장애인경기상’, ‘장애인체육상’으로 명칭 변경(안 제24조제1항)
- 나. 「상훈법 시행령」에 따라 대한민국체육상 심사위원회 구성을 기존 26명에서 11명 이내로 변경(안 제26조제2항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관계부처 의견 수렴 예정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

2) 입법예고 : 입법심사 전

3) 행정규제 : 규제심사 전

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4조제1항 중 “극복상 및 특수체육상”을 “장애인경기상 및 장애인체육상”으로 한다.

제26조제2항 중 “26명”을 “11명”으로 한다.

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(안)
제24조(대한민국체육상) ① 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대한민국체육상(이하 “체육상”이라 한다)의 종류는 경기상, 연구상, 지도상, 심판상, 공로상, 진흥상, <u>극복상 및 특수체육상</u> 으로 한다.	제24조(대한민국체육상) ①----- ----- ----- ----- <u>-장애인경기상 및 장애인체육상-</u> ---
② ~ ③ (생 략)	② ~ ③ (현행과 같음)
제26조(수상자의 결정) ① (생략) ② 체육상심사위원회는 체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사람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<u>26명 이내</u> 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	제26조(수상자의 결정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 ----- ----- ----- <u>11명 이내</u> ----- -----.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문화체육관광부 체육정책과	
연 락 처	044-203-3124